

구미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--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14. . .
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개정이유

가. 경로식당 이용료를 현실화하여 급식의 질을 높이고 식당 운영을 원활하게 하며

나. 이용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시설의 설치근거를 구체적으로 명기함.(안 제1조)

- 노인복지법 제4조 → 제4조 및 제37조

나. 경로식당 이용료 조정(안 별표 1)

- 2,300원 → 2,500원

다. 이용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.(안 제6조)

- 구미시에 거주하는 → 구미시에 주소를 둔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노인복지법」, 「주민등록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, 별첨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구미시 조례 제 호

구미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노인복지법」 제4조”를 “「노인복지법」 제4조 및 제37조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거주하는”을 “주소를 둔”으로 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8조제1항 관련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■ 구미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[별표 1]

노인종합복지회관 부대시설 이용요금(제8조제1항관련)

시설종류	이용대상	이용료산출	이용료
경로 식당	- 회원 및 일반노인	1식	2,500원
찜 질 방	- 회원 및 일반노인	1회	1,000원

※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은 무료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「노인복지법」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구미시 노인종합복지회관(이하 “회관”이라 한다)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<u>제4조</u> <u>및 제37조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6조(시설의 이용) ①회관 이용 대상자(이하 “이용자”라 한다)는 구미시에 <u>거주하는</u> 60세 이상인 사람으로한다.	제6조(시설의 이용) ①----- ----- ----- <u>주소를 둔</u> ----- 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
구미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-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식사하시는 어르신들의 급식의 질을 높이고 식당운영을 원활하게 하기위해 경로식당 이용료를 200원 인상하여 2,500원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재정수반요인이 발생함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경로식당 이용료 인상으로 인한 예상되는 비용이 1억원 미만으로
「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 제1항 제1호 사유에 해당함

4. 작성자

노인종합복지회관 관리계장 박동명 (☎480-4851)

노인종합복지회관 행정9급 성정우 (☎480-4853)

관계법령

□ 「노인복지법」

제4조(보건복지증진의 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,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**제2조**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37조(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·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·보급하여야 한다. <신설 2011.6.7. >

④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,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**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**. <개정 1999.2.8. , 2008.2.29. , 2010.1.18. , 2011.6.7. >

□ 「주민등록법」

제6조 (대상자)

- ①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(이하 "거주지"라 한다)를 가진 자(이하 "주민"이라 한다)를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. 다만,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.
- ② 제1항의 등록에서 영내(營內)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이나 세대주의 신고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.
- ③ 「해외이주법」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이주를 포기한 후가 아니면 등록할 수 없다.

소과 실 · 과		노인종합복지회관
입 안 자	관 장	김 사 기
	담 당	박 동 명
	담 당 자	성 정 우 (480-4853)